

#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 국세청 -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참고 ... '20년 가업승계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li> <li>○ 사후관리 기간: 10년</li> <li>○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li> <li>*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인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완화</li> <li>○ 기간 단축: 10년 → 7년</li> <li>○ 고용유지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li> <li>○ 업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li> </ul> </li> </ul> </li> <li>○ 자산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li> <li>- 예외적 처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추 가)</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li> <li>- 총급여액 유지 기준 선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급여액 80% 이상 유지</li> <li>*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100% 이상 유지</li> </ul> </li> <li>○ 업종 유지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li> <li>-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li> </ul> </li> <li>○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등)</li> <li>-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 필요시 등</li> </ul> </li> </ul> </li> </ul>
--	--

## I.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 18②)

### ■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공제의 종류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 1.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 ~ 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개인가업: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 ① 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 제외)

### 2)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내용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07.12.31. 이전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08.1.1. 이후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09.1.1. 이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60억원 •15년이상 : 80억원 •20년이상 : 100억원
'11.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1천5백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상 동	상 동
'12.1.1. 이후	상 동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100억원 •15년이상 : 15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13.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2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상 동	상 동
'14.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3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200억원 •15년이상 : 300억원 •20년이상 : 500억원
'16.1.1. 이후	공동상속 허용	상 동	상 동
'18.1.1. 이후	상 동	상 동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20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30년이상 : 500억원

##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③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할 경우) 상속개시일부턴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2. 1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 (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37~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기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p> <p>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p> <p>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p>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p> <p>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p> <p>1. 중소기업이 아닐 것</p> <p>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p>

2) 피상속인 요건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 등 : 상증법 시행령 §19②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2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② 피상속인이 기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정)

\* '20. 1. 1.이후 탈세·회계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3. 기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 기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기업상속재산명세서
- 기업용 자산 명세
- 기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기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기업상속 후 7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 1)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기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기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 위배한 경우는 위 산식에서 ‘자산처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재계산 (‘19.1.1. 이후 기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현재 1.8%) / 365

- 세무서장은 기업상속 이후 기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기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기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 ① 해당 기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 기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기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용 자산의 가액
- ▶ '기업용 자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기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 ②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소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 해당 기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
-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⑤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의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15⑩)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 사후의무 위반사유별 기준일

- ① ~ ③ :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④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⑤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 기간별 추정율

기간	추정율	기간	추정율
5년 미만	100%	5년 이상 7년 미만	80%

3)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15⑧)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기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기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기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 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5.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1) 기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기업상속공제는 기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7의2)
  -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 기업상속공제 적용률 : [기업상속공제금액 ÷ 기업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 시기를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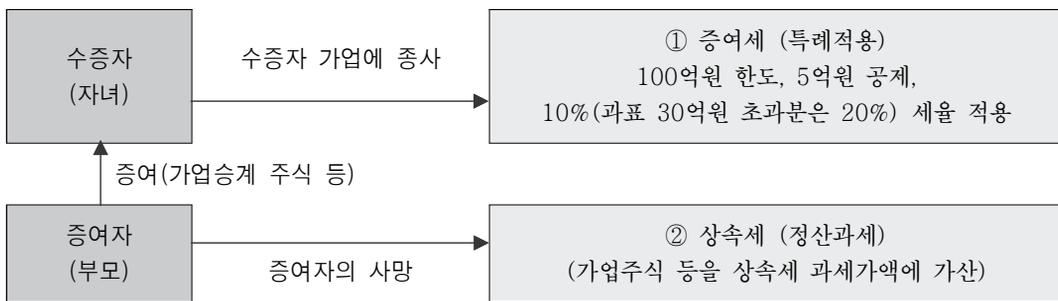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정세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 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⑪)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기간별 추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 II.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증여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공제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1.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증여일	적용가액	적용 한도	사후관리기간
'08. 1. 1.~'14. 2. 20.	특례대상 증여가액	30억원	10년
'14. 2. 21. 이후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제외	상동	상동
'15. 1. 1. 이후	상동	100억원	7년

### 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수증자 요건

-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③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 2) 증여자 요건

-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 중소기업 : 1. 가업상속공제 편 참조
-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 3)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아야 합니다.

####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3.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right)$$

- ②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④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함(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 가업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 ⑥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대로 합산
- ⑦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⑧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4. 기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1) 증여후 기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기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기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 \* '14.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개정 법령 부칙 제16조에 따라 종전 기업승계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 7년이 적용됨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사후관리 경과규정) 2014.12.31. 이전에 기업승계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text{이자상당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3/10,000$$

-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정되는 경우
- ① 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기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또는 요건 충족시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 기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수증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 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71조)

#### 1. 연부연납제도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 2. 연부연납 신청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 1)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허가 :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 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 2)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② 허가 :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 ① 신청 : 상속·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허가 :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 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4.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로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① 금전
- ② 국채 또는 지방채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청 기한	허가통지 기한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 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 는 증여세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 담보물을 함 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2009.1.1.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기한후 신고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가능( '10.2.18.이후 납세고지서 상 납부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 5. 납세담보의 제공

-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6.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함

## 7. 기업상속의 연부연납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연부연납 허가 후 첫 번째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3년 또는 5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20년에 해당합니다.

1)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

- ①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간 분할납부(3년간 거치 가능)
  - \* 총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제외
- ②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간 분할납부(5년간 거치 가능)

2)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left[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 매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연부연납기간

세목		연부연납기간 (2008.1.1.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8.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 2020.2.11.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종전에는 신청일 당시 이자율 적용). 다만, 종전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020.2.11. 이후 납부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개정 규정 적용시에는 계속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frac{\text{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text{총세액}} \times \frac{\text{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text{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times \text{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left[ \frac{\text{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text{총세액}} - \frac{\text{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text{총세액}} \right] \times \frac{\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times \text{연부연납 가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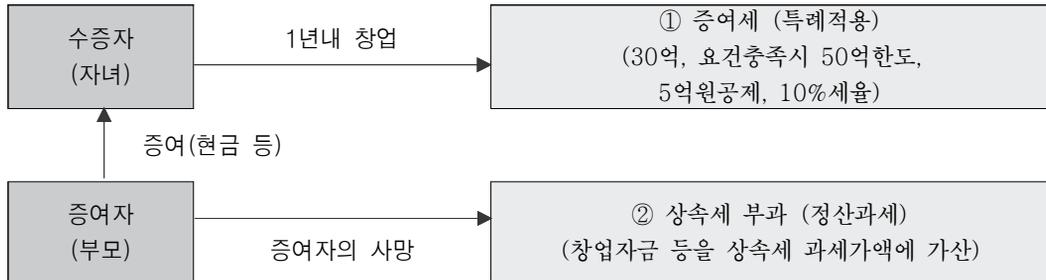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4.3.14~ '15.3.5	'15.3.6~ '16.3.6.	'16.3.7~ '17.3.14.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연 2.9%	연 2.5%	연 1.8%	연 1.6%	연 1.8%	연 2.1%	연 1.8%

## 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 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 2)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 3)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6③)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변호사업
  - 나. 변리사업

- 다. 법무사업
- 라. 공인회계사업
- 마. 세무사업
- 바. 수의업
-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자영예술가
  - 나. 오락장 운영업
  -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나. 이용 및 미용업
-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1)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5/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산식 :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 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text{이자상당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2.5/10,000$$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증진	생존시 기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
	기타사항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5억원) × 10%(20%)
사후 관리	가산세 부과	-
	증여세 추징 (이자상당액 가산)	-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폐업한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재차증여재산가산배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 II.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가가액 평가시 할증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 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 1)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 2)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 3) 할증평가액 산정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 2019.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분을 50% 초과시 30% 가산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4)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 (감자), 제29조의(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2차 출자 법인” 이라함)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 하인 경우
-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 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 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이후 평가분부터)
-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3.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특례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05.1월부터 '20.12월말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